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41호

경기도 화성시 매항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매항리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20호

2. 명 칭: 화성 매항리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 정 일: 2021년 7월 20일

4. 지정목적: 대형저서동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매항리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5. 근거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등

가. 위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주변 갯벌

나. 면적: 약 14.08km<sup>2</sup>

다. 좌표 : 별표1의 정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공유수면(해역)

\*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 함

라. 현황도: 별표 3

8. 습지보호지역 중 제외되는 구역

가. 시행일 당시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수역에 한함)

종류	소재지	명칭	적용구역	비고
어촌정주어항 (1개)	우정읍 매항리	매항2항	지정·고시 구역	1. 지정·고시 구역은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 어항을 신규 또는 확대 지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어항의 종류를 변경함과 동시에 어항수역이 확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농림 육상경계를 기준으로 반경 500m 해역 제외

### 9. 이용현황

- 광업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어업권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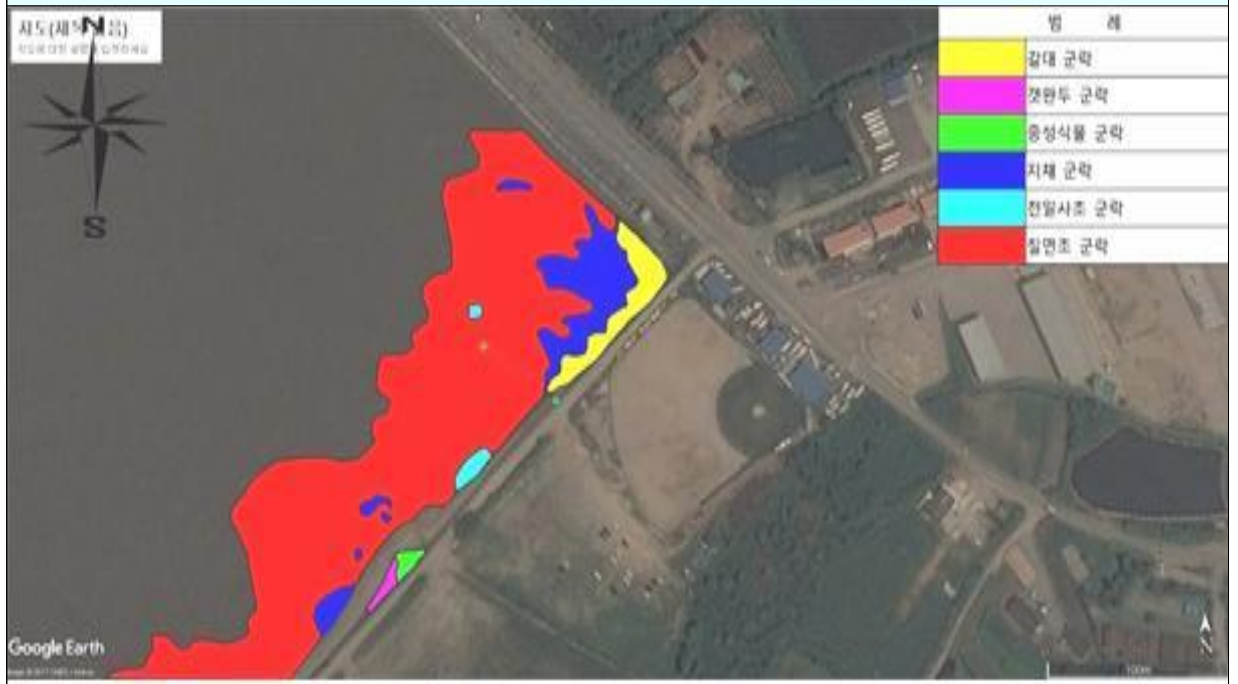
면허번호	면적(ha)	어업의 종류	양식물	존속기간	어업권자
화성시 마을 제290호	145	마을어업	패류 등	2016.09.01.~ 2021.08.26.	고온리어촌계
화성시 마을 제333호	110	마을어업	패류 등	2018.07.16.~ 2023.07.15	고온리어촌계
화성시 마을 제346호	400	마을어업	패류 등	2019.10.16.~ 2024.10.15.	고온리어촌계외 1
화성시 마을 제350호	120	마을어업	패류 등	2020.08.26.~ 2025.08.25.	매항리어촌계

### 10. 보호지역내 주요자원 명칭·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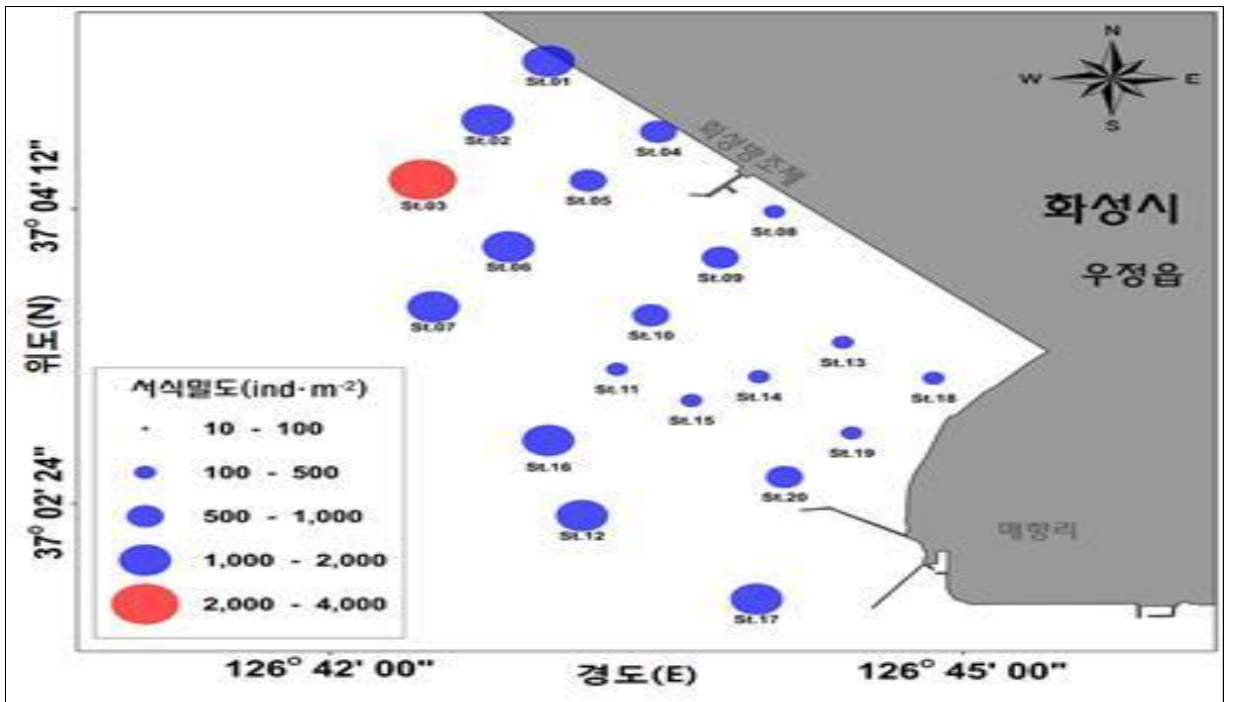
가. 주요자원 명칭: 칠면초 군락 등 20여종의 염생식물, 대형저서동물(환형, 절지, 연체, 극피 동물 등 169종)

나. 염생식물 분포현황

매항리갯벌 염생식물 분포현황



다. 대형저서동물 서식밀도 분포현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매항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점

정점	위도(N)	경도(E)
A	37° 5' 3.075" N	126° 43' 9.818" E
B	37° 3' 47.349" N	126° 41' 50.442" E
C	37° 3' 4.050" N	126° 42' 31.076" E
D	37° 2' 43.874" N	126° 42' 47.424" E
E	37° 2' 18.809" N	126° 43' 5.008" E
F	37° 2' 5.130" N	126° 43' 11.566" E
G	37° 1' 34.639" N	126° 44' 9.192" E
H	37° 2' 10.361" N	126° 44' 46.415"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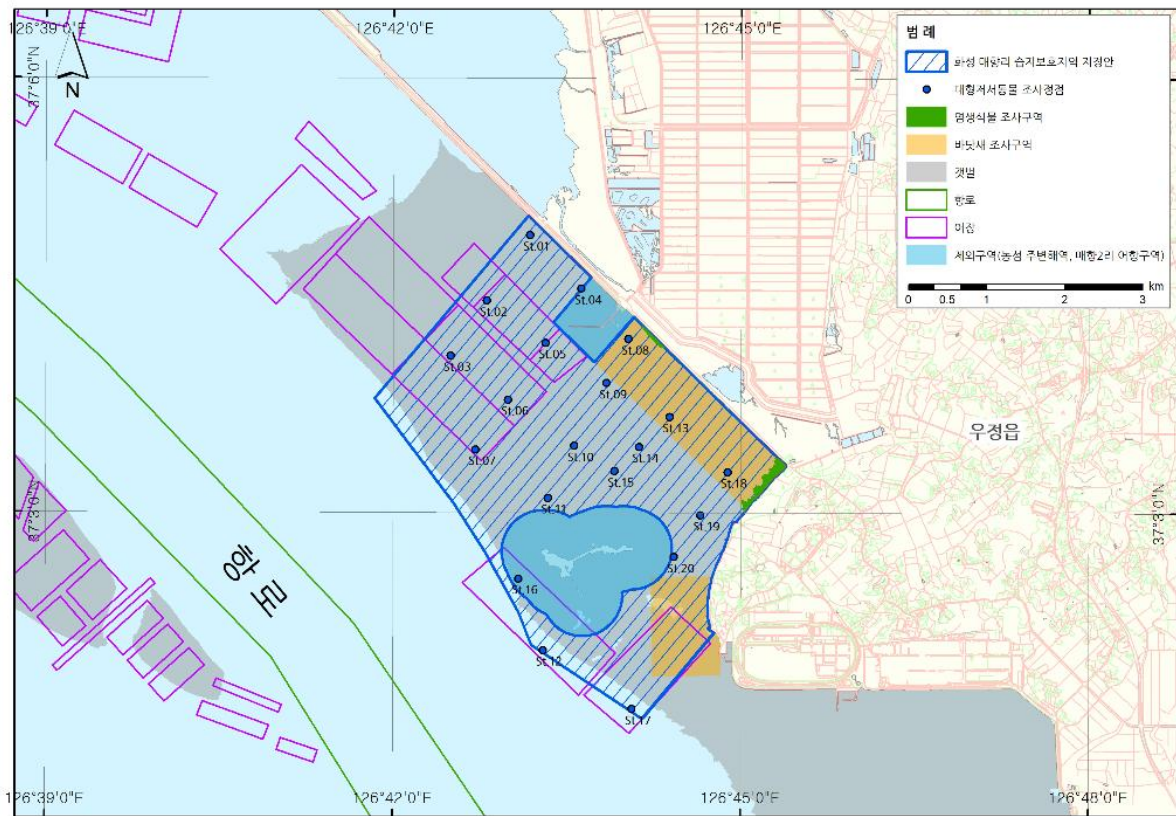
[별표 2]

제외구역(좌표 및 구역)

정점	위도(N)	경도(E)
I	37° 4' 37.646" N	126° 43' 42.371" E
J	37° 4' 18.885" N	126° 43' 22.770" E
K	37° 4' 2.399" N	126° 43' 44.110" E

[별표 3]

화성 매항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범위설정 현황도



- 비고 1. 사용도면: 국립해양조사원 수치해도 No.2431(축척: 1/67,000, 간행연월: 2018년 11월)  
 2. 측지좌표계: 세계측지계(WGS-84)  
 3. 좌표 및 면적산출 S/W: ArcGIS  
 4. 본 지도는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포함) 지정현황 표시용으로 다른 목적(예: 항해 및 수심참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